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9. 10. 2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9년 9월 19일

나. 발 의 자: 정선희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19년 9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9. 27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정선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구민의 의견이 충실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 실현과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시설관리공단 사무의 제3자 대행에 대한 구청장 승인 시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(안 제2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 - 안 제25조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사무의 제3자 대행에 대한 구청장 승인 시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.
- 검토결과,
  - 대행사무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공단 조직과 인력 운영 및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, 타당성 등에 대한 구의회 차원에서의 사전 검토와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선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9월 일

발의자 : 정선희 의원 외 6명

## 1. 제안이유

구민의 의견이 충실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 실현과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시설관리공단의 제3자 대행에 대한 구청장 승인시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(안 제25조)

## 3. 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 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(2019. 9. 10. ~ 9. 16.) 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 단, 제24조제1항 제1호”를 “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미 구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완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·경비·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4조제1항제1호 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